## ■학원 설립등록 상담 체크리스트

## (아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학원설립등록 신청해주세요)

※ 상담전화번호 (540-2583)

구분	확인내용	필요서류
종류	□학교교과교습학원(입시,보습,예능,독서실,특수,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학생대상?
설립 자 자 격 건 위 및 립 건	■성범죄・아동학대 결격사유 해당자, 공무원, 학생은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결격사유조회 □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 교습소 교습자 여부 확인: 예 / 아니오  ■건축물 주소지 확인: 학원, 교습소 등록 여부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변경일 2014.03.24.〉 (집합건축물-임차인별,소유자별) (동일건축물 내 학원(교습소) 바닥면적의 합 500㎡ 기준),독서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만 가능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500㎡미만) □ 교육연구시설(500㎡이상)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1.23.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만 가능함. ■타 법에 의해 학원설립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지구단위계획 등은 상시로 변동 가능한 것으로 설립예정자는 타법에 의한 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관청에 확인해야 함.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  ※ 정확한 건축물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 혹은 학원 실사 방문 시 불법건축물 발견 시 학원설립 불가  ■유해업소가 없는가?(상담 시 ~ 등록 시)  □건물 연면적 1,650㎡ 미만: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설립 불가(평생직업학원 제외)  □건물 연면적 1,650㎡ 이상: 유해업소 저촉 관련여부 확인(평생직업학원 제외)  ※같은 충일 경우, 수평거리 20m이내 / 인접 충일 경우, 수평거리 6m이내  ※유해업소: 노래방, 단란주점, 성인PC방, DVD방, 인형뽑기방 등  ※학원설립 등록 당시 기준으로 유해업소가 저촉이 되면 등록 수리 불가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거실면적이 200㎡이상인가?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여부(승강기 미포함)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유해업소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즉통계단의 2개도의 중 즉 <b>구(중경기 기도함)</b> ■ 즉통계단(관할건축과) 및 소방시설(관할소방서) 등에 문의	
임대 차 계약 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였는가? □소유주[임대인]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날인(서명) □설립자[임차인]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계약서에 날인(서명)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 ※정관(목작: 학원운영업,교육서비스업), 이사회회의록, 법원등기부등본, 이사·감사 등 명단[주소] 신분증, 행정정보이용동의서(결격사유조회), 성범죄및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동의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하였는가? ■임대차 계약기간 확인하세요? 설립자 민원처리기간이 8일이며, 이상없이 등록 수리될 경우 학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단, 학원등록증이 발급되었을 때, 학원으로의 건축물 사용기간이어야 합니다. 예시) 접수일 2020.01.02. 처리예정일: 2020.01.14 계약서상 임대기간 2020.01.15.~2022.01.15. (※) 접수일 2020.01.02. 처리예정일: 2020.01.14 계약서상 임대기간 2020.01.01.~2022.01.0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경우) 또는 <b>동기부등본</b> (본인 소요인 경우)

구분	확인내용	필요서류
- 下世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 등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는가?  □(입시·검정및보습,국제화,기타)[강의실] 1실당 10㎡이상, 합 45㎡이상,	시설평면도 (각 실별 면적 ㎡을 꼭 산출해 주세요) 지기강의실
	□남자용, 여자용 출입문 별도, 대·소변기 각1개 이상, 옷걸이, 세면대 등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	
시설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제출 대상(다중이용업소에 해당)(관할소방서 발급)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바닥면적에서 복도, 화장실, 계단 면적 제외)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 : 고시원, 수면방, 전화방, 콜라텍, 일반음식점(100㎡이상), 유흥주점, 목욕장업 등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골프연습장업(스크린),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실내권총사격장)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다중이용업소에 해당)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소방・방화시설완비증 명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아다의 건국물에 막원(구용인원 300명 미단)이 물 이상 있는 경우도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기관 문의(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b>※ 063-917-4053</b> )	별표 제34호 서식
명칭	■학원명칭 확인:[고유명사+학원], 학원명 중복, 금지어, 에이비씨(ABC)학원 ※ 최고, 으뜸 등의 과대, 허위광고로 생각되는 명칭 사용 불가 ※ 중복명칭 확인: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학원·교습소 정보- 학원명 조회 ■간판 설치 시 메인간판 하나는 반드시 <u>신고한 학원명칭 그대로</u> 표기	특허 등록 상표 조회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 '상표'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서류	■설립자의 강사등록 여부	졸업중명서
등	■교습비 등록 여부	교습비등록서
0	■홈페이지 (김제교육지원청>전자민원창구>민원관련정보>각종설립안내>학원)	

※ 학원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위와 같이 안내하여 드렸지만, 학원법을 포함한 관계법 모두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모든 법령은 민원인께서 숙지하셔야 하며, 우리 청에서는 미숙지로 발생한 재산상, 행정상 등의 어떠한 피해도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